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44
----------	------

2024년 6월 2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 상정일자 :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가. 지역교육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지역교육복지센터)에 따라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12년부터 자치구 단위로 순차적으로 구축되어 25개의 센터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음(2024. 12. 31. 위탁 계약 기간 종료)
- 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의 교육복지 지원체제 변화에 따라 지역교

육복지센터의 역할 강화 및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계속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지역교육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
(지역교육복지센터)

2) 추진필요성

- (국가적) 교육취약학생 성장을 돕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실현
- (지역적) 학교-교육청-지역기관-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학생 맞춤통합지원 실현
- (전문적)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복지 체계적 지원 강화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25개 센터)

- 교육복지 일반학교 대상 학생별 위기 상황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기관으로서의 연계·협력
- 교육복지안전망 강화를 통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자원 조사 및 자원 발굴을 통한 풍부한 지역자원 확보
- 복합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라. 민간위탁 기간 : 2025. 1. 1.~2027.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모 및 재계약

○ (공모) 공개모집 공고 후 교육지원청별 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재계약) 계약갱신신청서 접수 후 교육지원청별 교육복지협력사업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바. 예산 규모 : 금21,507,194천원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센터합계
4인 센터(7개)	1,742,808	1,772,100	1,802,015	5,316,923
5인 센터(15개)	4,364,030	4,440,780	4,519,269	13,324,079
6인 센터(3개)	1,003,839	1,020,680	1,037,730	3,062,249
소계	6,108,863	6,214,906	6,323,311	18,647,080
센터합계(25개)	7,056,349	7,168,334	7,282,511	21,507,194

※ 예산은 민간위탁기간(3년) 동안의 추계액이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총액제+신청제), 사업비,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임

※ 산출근거 :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체제별 예정원가조사보고서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동의안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944호로 제출되어 2024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동의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의 교육복지 지원체제 변화에 따라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센터의 민간위탁을 계속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1) 제출시기에 대한 검토

- 지역복지센터는 지역 내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일반학교의 저소득층 학생¹⁾ 및 교육취약 학생²⁾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현재 모든 자치구(25개구)에 각 1개씩 센터가 개소되어 서울시에 총 25개 센터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표-1] 지역교육복지센터 연도별 구축 현황

구분	지정 년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계
시범운영 (특교)	2012			구로	노원			강서		관악		성북	5
센터확대 (자체)	2013	동대문 중랑	은평	금천 영등포	도봉	중구	강동	양천			성동	강북	11
	2016		서대문				송파			동작	광진		4
	2017		마포			용산			강남				3
	2018							서초					1
	2020					종로							1
계		2	3	3	2	3	2	2	2	2	2	25	

1) 법정저소득층학생(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및 기타저소득층학생(중위소득 80% 이하)
 2) 다문화·탈북의 문화취약, 정서·부적응·학습 부진의 적응취약 등

- 이와 같은 지역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이하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³⁾에 근거한 것으로 민간위탁 운영 기간은 3년이며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초 시행시 뿐만 아니라 해당사무를 연속해서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의회 동의⁴⁾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특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연속으로 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 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지역교육복지센터)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교육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당지역 내의 교육복지 자원 조사 및 개발
2.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4.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을 활용한 자원봉사자 양성
5. 그 밖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복지 지원사업

③ 교육감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자치구에게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각 센터에는 학교, 자치구, 교육지원청에서 추천받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4)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시행 2019.3.28.][서울특별시조례 제7017호, 2019.3.28., 일부개정]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 25개 지역교육복지센터는 2024년 12월 31일에 위탁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는 2019년 3월⁵⁾에 이루어졌기에 센터의 계약 만료 이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금번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교육복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있던 2019년 이후 5년이 경과하였고, 2022년 계약이 체결된 25개 센터의 계약 만료 기한이 2024년 12월로 도래하였기에, 동 조례 제4조의2제2항⁶⁾에 의해 지역복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절차시기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검토

- 한편,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⁷⁾에 따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역교육복지센터는 ‘위기 학생’의 상황 파악 및

5) 2019년「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동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기에 의회에 별도 동의안은 제출되지 않았음.

*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략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7)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생략

분석, ‘학생별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 위기 학생들의 장기·지속 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복지의 전문성이 요구되며⁸⁾,

실제 센터는 교육복지 전문가(지역사회교육전문가)⁹⁾가 파견되지 못한 일반학교의 교육취약 학생들 또한 관리하고 있어 센터 직원 역시 교육복지 전문가로서 역할을 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역복지센터 운영 매뉴얼」을 통해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 조건을 사회복지사(2급) 등의 자격증 등을 소유하면서 교육 또는 복지 등의 분야에 활동 경험 있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위탁의 대상사무의 적정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지역교육복지센터 인력 자격 요건

구분	센터장	직원
자격 조건	① 4년 이상의 교육 또는 복지 등의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활동 경험과 2년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 활동 경험이 있는 자	① 2년 이상의 교육 또는 복지 등의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활동 경험과 1년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 활동 경험이 있는 자(권장)
	② 관련 전공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공: 교육학, 사회복지(사업)학, 심리학, 상담학, 청소년학, 아동(복지)학, 정신의학 등 ※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평생교육사 2급 이상, 교사 자격증 등 한 가지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중 ①과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에 대한 검토

- 현재 25개 센터의 인력운영 및 지원 학생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대문센터’의 경우 서대문 지역 내 지원 학생수(1,732명)가 타 자치구에 비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인력은 4인으로 가장 적

8)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2024.3.). 2024년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계획(안), 2페이지

9)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 사업 대상 학교에 파견되어 위기 학생들을 관리하는 교육복지 전문가로서 현재 서울시 초·중·고 313개교에 파견되어 있음.

은 규모에 해당합니다.

- 반면 ‘강서센터’는 지원 학생 수가 자치구내 하위(173명)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인력은 6인으로 가장 큰 규모에 해당되고 있는바, 이는 중점센터 지정으로 인한 특교 예산으로 1인 인력이 증원된 것이나,

금천(470명), 강북(459명), 노원(454명) 등에서는 지원 학생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점센터로 지정 및 인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역교육복지센터는 센터별 인력 규모가 해당 지역 지원 대상 학생 수 등이 고려되지 않은채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센터 인력 규모의 기준 역시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표-3] 지역교육복지센터별 인력 현황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강북	합계
4인 센터		서대문센터	금천센터		용산센터 종로센터			서초센터	동작센터		강북센터	7개소
5인 센터	동대문센터 증랑센터	은평센터 마포센터	구로센터 영등포센터	노원센터 도봉센터	중구센터	강동센터	양천센터	강남센터	관악센터	성동센터	성북센터	15개소
6인 센터						송파센터	강서센터			광진센터		3개소
합계	2	3	3	2	3	2	2	2	2	2	2	25개소

[표-4] 지역교육복지센터별 지원 학생 수

(단위 : 학생수)

센터명	동대문	증랑	마포	서대문	은평	구로	금천	영등포	노원	도봉	용산	종로	중구
학생수	427	397	640	1,732	566	383	470	745	454	950	429	318	313
센터명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학생수	501	458	173	342	108	124	233	888	442	203	103	459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및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5개 센터 종합 평가 점수가 최하 82.2점부터 최상 98.3점까지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바,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동일한 기준으로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성과 측면에서는 센터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표-5] 지역교육복지센터별 2023년 성과평가 결과 현황

(단위 : 점수), 100점기준

센터 평가순위	1	1	1	4	5	5	7	8	9	10	11	12	12
학생수	98.3	98.3	98.3	97.6	97.0	97.0	96.6	95.9	95.5	95.3	95.2	95.0	95.0
센터 평가순위	14	15	16	17	18	19	20	20	22	23	24	25	
학생수	94.7	94.3	93.7	93.5	92.0	91.0	90.0	90.0	89.0	87.9	85.5	82.2	

- 이와 같이 현재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은 자치구별 지원 학생수 대비 적정 인력 규모 문제, 센터별 운영 방식 및 성과 격차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지역교육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지라도 센터별 지역 현황 및 운영 방식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내실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IV.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944
----------	------

제출연월일 : 2024. 5. 27.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참여협력담당관)

1. 제안이유

- 가. 지역교육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지역교육복지센터)에 따라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12년부터 자치구 단위로 순차적으로 구축되어 25개의 센터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음(2024. 12. 31. 위탁 계약 기간 종료)
- 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의 교육복지 지원체제 변화에 따라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역할 강화 및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계속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지역교육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지역교육복지센터)
 - 추진필요성
 - (국가적) 교육취약학생 성장을 돕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실현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교육 사각지대 해소) 교육취약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교육 복지, 위기학생 발굴 지원 등) 체계 마련

- (지역적) 학교-교육청-지역기관-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학생
맞춤통합지원 실현

- (전문적)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복지 체계적 지원 강화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25개 센터)

- 교육복지 일반학교 대상 학생별 위기 상황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기관으로서의 연계·협력

- 교육복지안전망 강화를 통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자원 조사 및 자원 발굴을 통한 풍부한 지역자원 확보

- 복합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라. 민간위탁 기간 : 2025. 1. 1.~2027.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모 및 재계약

- (공모) 공개모집 공고 후 교육지원청별 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재계약) 계약갱신신청서 접수 후 교육지원청별 교육복지협력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지역교육복지센터) ④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바. 예산 규모 : 금21,507,194천원

(단위:천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센터합계
4인 센터(7개)	1,742,808	1,772,100	1,802,015	5,316,923
5인 센터(15개)	4,364,030	4,440,780	4,519,269	13,324,079
6인 센터(3개)	1,003,839	1,020,680	1,037,730	3,062,249
소계	7,110,677	7,233,560	7,359,014	21,703,251
센터합계(25개)	7,056,349	7,168,334	7,282,511	21,507,194

※ 예산은 민간위탁기간(3년) 동안의 추계액이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총액제+신청제), 사업비,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임

※ 산출근거 :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체제별 예정원가조사보고서

3. 참고사항

가. 지역교육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성과보고서 : 별첨

나. 관계 법령 :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

제11조(지역교육복지센터)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교육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당지역 내의 교육복지 자원 조사 및 개발
2.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4.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을 활용한 자원봉사자 양성
5. 그 밖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복지 지원사업

③ 교육감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자치구에게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각 센터에는 학교, 자치구, 교육지원청에서 추천받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2)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